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6-01-12

대 구 고 등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25누10152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등
원고, 항소인	주식회사 A
	소송대리인 법무법인 ○○ 담당변호사 이○○
피고, 피항소인	○○시장
	소송대리인 법무법인 ○○ 담당변호사 박○○
제 1 심 판 결	대구지방법원 2025. 6. 19. 선고 2024구합20637 판결
변 론 종 결	2025. 10. 17.
판 결 선 고	2025. 11. 28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주위적으로, 피고가 2023. 4. 11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. 예비적으로, 피고가 2017. 6. 21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6-01-12

739,758,560원, 농어촌특별세 36,987,920원, 지방교육세 73,975,830원의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.

이 유

1. 처분 경위 및 관계 법령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,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'처분의 경위', 제2항 '관계 법령'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.

2.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당사자 주장

원고는, 관련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의 원인이 되는 원고의 이 사건 쟁점토지 취득행위가 무효인 사실이 확인되었는바,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이 사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제기기간이 도과되고 난 뒤에 한 것으로 부적법하여 피고가 경정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한다.

나. 판단

1)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,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(대법원 2017. 8. 23. 선고 2017두38812 판결 등 참조)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6-01-12

2) 갑 제4호증,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, 이 사건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,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,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.

①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서 통상의 경정청구는 지방세에 관한 경정청구기한을 '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'로 제한하고 있는데, 이 사건 경정청구는 취득세 등의 법정신고기한인 2017. 7. 25.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3. 3. 3.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.

② 원고 주장과 같이 관련 판결[1]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, 관련 판결은 2022. 8. 18. 선고되어 2022. 9. 7. 확정된 점,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관련 판결로 인해 이 사건 중학교용지의 취득은 물론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 역시 무효인 점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원고는 적어도 관련 판결이 확정된 2022. 9. 7.경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, 이 사건 경정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3. 3. 3. 제기되었다.

③ 결국 이 사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여 피고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, 피고의 이 사건 거부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.

3.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 주장

1) 원고는 이 사건 조합, ○○○도를 상대로 한 '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가합2227 사건 판결'이 2025. 11. 12. 확정됨에 따라, 위 판결을 근거로 2025. 11. 14. 피고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2025. 11. 21. 피고로부터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 1,000,633,800원을 환급받았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6-01-12

피고의 환지처분으로 ○○○도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원시취득 하였으므로, 피고가 2017. 6. 21.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.

나. 판단

이 부분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.

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과세관청의 별도의 부과처분은 부존재하며, 구 지방세기본법(2010. 3. 31.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되어 2011. 1. 1.부터 시행된 것)에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되면서,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구 지방세법(2010. 3. 31.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어 2011. 1. 1.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) 제72조 제1항이 삭제됨으로써 2011. 1. 1. 이후로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의 신고납부를 처분으로 의제할 수 없게 되었다.

그리고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등 본세를 전제로 하고 있고(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2항 제1호),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'농어촌특별세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의 기한·납부방법, 가산세 경감 등은 당해 본세의 예에 의한다.'고 규정하고 있는 등 불복방법에 대하여도 본세에 의지하는 종속적인 성격의 세금이다.

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 신고·납부를 부과처분으로 보고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.

4. 결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6-01-12

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곽○○

판사 송○○

판사 박○○